



제 410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예외를 삭제 〉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3521호)

2023.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예외를 삭제	2

[참고자료]

1. 규제샌드박스 개요	8
2. 다른 법률에 임시허가 유효기간 관련 조문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7. 27

다. 회부연월일 : 2023. 7.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할 수 있음.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나,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해당 법령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법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고, 임시허가 제도를 운용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의 경우 연장을 제한하는 예외 규정이 없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시허가도 동일한 유효기간 연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법령정비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제6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6항).

Ⅲ. 검토의견

1.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예외를 삭제

가. 개정안 요지

- 임시허가에 따른 관계부처의 법령정비 의무 등을 규정하는 제37조 제6항 내용 중, 유효기간 내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라도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6항 단서 삭제).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 (임시허가) ① ~ ⑤ (생략)	제37조 (임시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⑥ ----- ----- ----- ----- ----- ----- ----- -----

현행	개정안
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단서 삭제>

다. 검토사항

- ICT 규제샌드박스¹⁾ 제도의 하나인 임시허가는 허가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관한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불명확·불합리한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임.
- 현행법²⁾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안에 해당

1) 기존 규제에 불구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 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 (참고자료 1. 참고)

2)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임시허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 ② 관계기관의 장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신규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연장된 유효기간(최대 4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해당 법령³⁾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개정안은 단서의 내용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고자 함.

○ 한편, 현행 제37조제6항 개정 시(2021.6.8.), 법률의 정비를 의무화하고 그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 등⁴⁾이 있어 단서가 추가되었음.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⑧ ~ ⑫ (생략)

3)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21인)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0.09.24.)

-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1.02.19.)

-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1.03.2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0.05.06.)

- 규제샌드박스 관련 5개 법⁵⁾은 공통적으로 관계기관이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을 정비하고, 만약 유효기간 내에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 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개 법(정보통신융합법, 연구개발특구법⁶⁾)에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단서가 규정되어 있음.⁷⁾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르면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많은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법률 개정이 지연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임시허가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임.

5)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제16조의 7,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산업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6, (국토부) 스마트도시법 제51조, (중기부) 지역특구법 제90조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⑧(생략)

⑨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3. 21.][시행일: 2023. 9. 22.]

7)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별법과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해당 법에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임시허가 지정 사례가 없어 개정법 시행 및 첫 임시허가 사례 지정 이후 해당 조문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관련 사례>

1. 모바일 전자고지: '19년 임시허가 이래 497개 기관이 사용하고 약 3억 건이 발송되는 등 보편화되었으나 방통위 등의 법령 정비 추진 지연으로 서비스 중단 위기를 경험('23.1월)
2.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 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하게하는 서비스
 - 임시허가 유효기간: '20.6.24일 ~ '24.6.23일
 -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2023.8.) 자료를 재구성

- 아울러,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산업부·국토부·중기부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는 기업에 비해 과기정통부(ICT·연구개발 특구)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에만 임시허가 연장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데 따른 차별우려⁸⁾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개정안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한 기업들이 사업 중단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8) 현재 5개 부처에 6개 규제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기업은 출시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기반기술·응용분야 등을 고려하여 어느 부처의 샌드박스를 이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임.

-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산업분야에 혁신적인 서비스모형을 출시하고자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기업의 경우 ICT규제샌드박스(과기정통부), 산업융합샌드박스(산업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특구지역에 위치한 경우 연구개발특구샌드박스(중기부), 스마트도시(국토부) 등도 선택 가능
- 그런데, ICT 규제샌드박스를 선택할 경우 다른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경우에 비해 임시허가를 받더라도 기간 내 법령정비 미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적 불확실성이 높아, 신청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규제샌드박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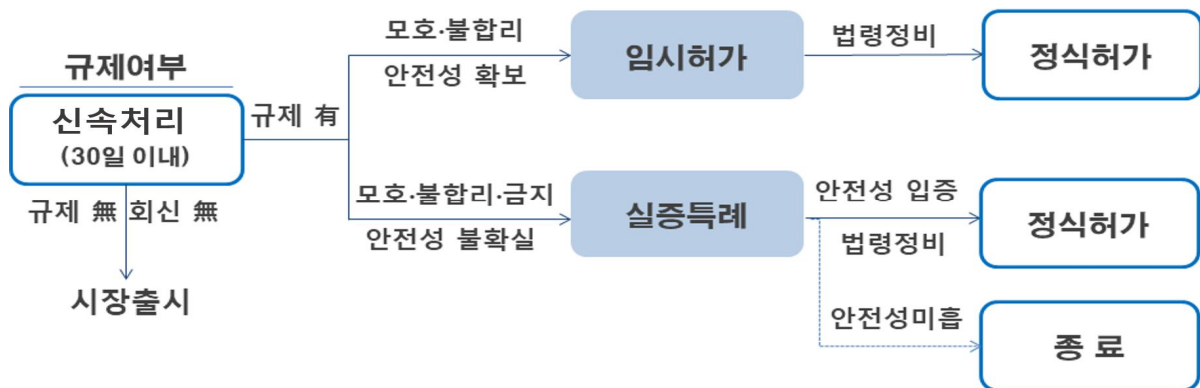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단서 규정이 2021년 개정 당시 세 차례의 우리 위원회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법령 미정비 시 계속해서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하는 것은 유효기간을 정한 임시허가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을 반영하여 숙의를 통해 수정 신설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서조항 삭제를 통해 임시허가 사업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타부처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수용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2

[참고자료 1] 규제샌드박스 개요⁹⁾

- **(개념)** 기존 규제 불구,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아래
(시간·장소·규모)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
-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특례 제도 도입
 - 규제특례 3종 세트 : 규제 신속처리(확인)^①, 임시허가^②, 실증특례^③ 도입
 - ①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無규제 간주
 - ② 법령 모호·불합리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 ③ 법령 모호·불합리·금지 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

< 규제샌드박스 운영절차 >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다른 법률에 임시허가 유효기간 관련 조문

법률	내용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부)	제10조의6(임시허가) 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중기부)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⑨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가준 등) ②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기정통부)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⑨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3. 21.][시행일: 2023. 9. 22.]